



**“국제카르텔! 남의 일이 아니다”
: 2010년은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원년의 해**

2010.4.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국제카르텔 가담자가 도망칠 곳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

- 경쟁법에 역외적용조항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국가가 60개국을 넘어섬
- 미국은 인터폴의 Red Notice, 외국과의 사법공조조약 및 당국간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카르텔 가담자에 대한 감시망을 넓혀가고 있음

□ 미국은 경쟁법 집행의 최우선 순위를 카르텔 적발에 두고 특히, 자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을 엄중히 제재

-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후퇴국면에서 국민을 달래고 정부지출을 보충하기 위해 국제카르텔을 공격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을 선언 (09.2.)
- 08년 현재 국제카르텔은 DOJ가 수사를 진행중인 135건중 50건에 달하고, 97년이후 부과한 전체 벌금 약 20억불 가운데 90%이상을 차지

- 카르텔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한도를 인상해왔고 이에 따라 벌금 부과액수가 00년 152백만불에서 09년 10억불로 대폭 증가

- 또한, 평균 개인징역형 기간도 90년대 8개월에서 09년 24개월로 급증하는 등 카르텔 가담자에 대한 형벌집행도 강화추세

* 디렘 국제카르텔사건에서 국내 임직원 10명이 총 8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01년 이래 구속된 기업인의 약 25%가 외국인

- 법집행의 주요타겟은 유럽 및 아시아 업체들이며, 벌금규모 상위 10개 업체중 4개업체가 한국기업

* LG디스플레이(4억불), 대한항공(3억불), 삼성전자(3억불), 하이닉스(1.8억불)

□ 유럽도 카르텔 억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과징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위기에도 고액의 과징금이 계속 부과될 것을 예고

* 2010 ABA 국제카르텔워크샵: "Fines are the most effective tool... Fines will remain high during the economic crisis." (Lowri Evance EC 경쟁총국 부국장)

○ EU가 카르텔 사건에 부과한 벌금액은 02년까지 총 9.4억 유로였으나 07년 한해에만 33억 유로를 초과하는 등 대폭 증가 추세

- 카르텔국은 05.6. 50명의 직원으로 신설된 이래 07년 및 09년 각 20명씩 증원되어 현재 90명의 직원 보유

- 06.12. 감면고시가 성공적으로 개정된 이후 자진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카르텔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은 자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사건 처리에 있어 외국과 공조가 가장 중요하며 경쟁당국간 국제협력에 역점을 둘 방침 (2010년 다케시마 위원장 신년사)

○ 08년 마린호스건에서 최초로 일본 경쟁법을 역외적용하였고, '09.10월 한국 기업이 포함된 TV용 브라운관 건에서 총 4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 삼성SDI 말레이시아법인에 180억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자국의 법집행 관할권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추세의 단면을 보여줌

○ '06년 법개정을 통해 일본 공정위에 강제조사권 부여, 감면신청제도 도입 등 카르텔 조사역량을 확충하고 공정위내에 형사조사부도 신설

□ 중국은 08.8월부터 반독점법이 시행되었으며 향후 역외적용 근거규정에 따라 강력한 법집행이 예상

* 제2조: 중국 영역외의 독점행위가 국내의 시장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동 법을 적용한다.

○ 집행기관의 다원화, 실체·절차법적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초기 경쟁법 집행에 있어 다소 혼란이 예상되나 외국기업에 대해 경쟁법 집행이 집중될 우려도 존재

‘이 정도도 안하고 어떻게 사업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문제되지 않는데’, ‘문제될만한 것은 빨리 없애는게 상책’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기업의 국제카르텔 리스크는 계속 증가할 것

□ 그간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경제 제1의 공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카르텔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해 옴

① 문화적 차이에 따라 카르텔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사례

○ 미국 법무부로부터 벌금 및 개인징역이 부과된 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단순한 가격확인 수준의 의사연락은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방심하여 외국의 제재를 받게됨

- 또한, 법위반에 대한 인식없이 수요처 또는 언론을 대상으로 경쟁자와의 회합사실을 발설하여 외국 경쟁당국의 인지단서를 제공

☞ 동양적 정서상 인적 관계에 의존한 영업전략 관행에 기인한 사례

- 어떠한 경쟁사 임직원과의 회합도 카르텔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책임은 가담자 개인에게 귀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

② 카르텔 발생국가에 경쟁법이 없어 제재위험성을 인식못한 사례

○ 복수의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가 진행중인 건에서 카르텔 가담자들은 경쟁법이 없는 동남아 국가에서 주로 회합하였으나, 현지에서 제조된 제품이 미국·EU로 수출됨에 따라 제재대상에 포함

☞ 카르텔이 자국시장에 끼친 ‘영향(effect)’이 인정되면 각국은 카르텔 발생지와 관계없이 자국 경쟁법을 역외적용함

-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들은 전세계 국가의 경쟁법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아야 함

③ 외국 경쟁당국 조사에의 대응이 미숙하여 피해가 확대된 사례

- 미국의 소환장(subpoena)를 발부받은 후 문서를 파기한 행위가 적발되어 유죄인정 합의시 협상력의 여지가 대폭 축소된 경우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피조사시 위법증거를 파기함으로써 부과받는 과태료가 제재시 받을 과징금에 비해 미미하므로 기업의 인식이 부족

- ☞ 대배심원(grand jury)이 발부하는 소환장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

- 선진국은 절차상 룰을 무엇보다 중시하며 이를 경시할 경우 법정모독죄(contempt)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당국의 절차에 따를 필요

□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여감에 따라 외국의 감시도 강화되고 있으므로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외의 경쟁법 준수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시급**

- 그간 우리기업들이 국제카르텔 가담혐의로 외국에 납부한 벌금액만 1조 7천억원에 달하며 해당기업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초래

- 일단 제재가 시작되면 여러 국가로 파급되고 민사 손해배상소송, 개인에 대한 징역형, 막대한 법률비용 등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대

- 담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수익보다 국제카르텔 적발시 지출해야할 비용이 훨씬 크므로 사전 예방 노력이 더욱 강조됨

- 경쟁법 집행이 강한 미국의 경우 카르텔을 범죄중에서도 중죄(felony)로 인식하고 있는 바, 카르텔 예방노력은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국제카르텔 예방사업에 공정위가 앞장선다”

- 고객이 필요로 하면 어느 곳이든 간다
- 기업과 함께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을 마련·선포
-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CEO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 미국, EU, 중국 현지 기업을 위해서도 해외현지교육 실시

□ 공정위는 국제카르텔 사후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우리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카르텔 예방교육을 추진해** 옴

- 04년부터 PCRМ(정책고객 이메일서비스)을 통해 1,500여개의 사업자(단체)에 매월 1회 국내외 카르텔 법집행 동향을 전파
- 06년부터 매년 카르텔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국 법제 및 집행과정, 예방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교육자료를 배포

□ 작년에 개최한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선포식’을 계기로 **국제카르텔 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

- 09.11.18. 전문가 TF가 마련하고 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채택한 글로벌 기업의 행동준칙을 재계내에 확산, 정착시키기 위해 주요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카르텔 예방사업을 지속 추진
- 우리기업의 인식을 전환시켜 외국 경쟁법 집행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공정위 본연의 역할중 하나로 설정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교육사업을 전개중

1. 산업별 맞춤형 예방교육

□ 국제카르텔 예방노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고 경영자부터 실무자까지 해당산업에서의 구체적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교육** 실시

- 최고 경영진부터 국제카르텔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법 위반 예방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업계 실무자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교육
- 업계별 교육수요에 맞도록 카르텔 이슈를 공유하는 **산업별 또는 수출 지역별로 분류하여 분기별로 실시**
 - *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과 주요국(미국, EU, BRICs) 수출기업 대상
 - 2010.3월중 전자·디스플레이·반도체, 조선업계를 대상으로 기 실시하였으며, 기타 업종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
- 업계의 건의사항도 수렴하고 간담회 개최후에는 해외 경쟁정책 동향 정보제공, 교육실적 점검 등 사후 관리 추진

2. 해외 현지 설명회

□ 국제카르텔 예방노력이 극대화되도록 해외 현지 설명회를 적극 추진

- 그간 우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해외현지 자회사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
- 외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자회사의 카르텔에 대해서도 제재하고 있으나 해외진출기업의 국제적 경쟁법 준수 의식은 미약한 상황
- 전통적으로 카르텔 규제가 엄중하거나 수출규모가 크고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이 많은 **중국, 유럽, 미국**에서 현지 설명회를 실시
 - * 유럽(4월, 프랑크푸르트)→중국(5월, 북경)→중국(7월, 북경)→미국(10월, L.A.) 순으로 개최할 예정
- 강사는 **해당국 경쟁당국 직원, 경험이 풍부한 현지 변호사, 공정위 간부**로 구성하여 해당지역 관련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 아울러 설명회 과정에서 우리나라 현지 기업의 사업활동 또는 외국 경쟁당국 대응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도 적극 수렴하여 대응할 예정